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토포앤코코리아투자자문 주식회사  
(영문명) Topor & Co. Korea  
(홈페이지) <http://www.tckinvestments.com/>

본 점 소 재 지 : 110-786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신문로1가) 흥국생명빌딩 12층  
(전 화) 02) 723-2900

대 표 이 사 : 오하드토포, 신민기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  
(성 명) 양정경 (전 화) 02-723-2900

작 성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전수연 (전 화) 02-723-2913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1-2호)

### 유상증자 결정

1.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기타주식 (주)	1 주
2.1주당 액면가액 (원)		100원
3.증자전 발행주식총 수 (주)	보통주식 (주)	61,290,000 주
	기타주식 (주)	2 주
4.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7,454,800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p>정관 제8조의 2 (1)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하 “무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로 한다.</p> <p>제8조의 3 (1)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배당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로 한다.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할 수 있다.</p> <p>제8조의4 (1)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로 한다.</p>
주식의 내용		무의결권부 전환우선주식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3%에 상당하는 보통주로 전환
	전환청구기간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주식수	1,974,548.969072
의결권에 관한 사항		무의결권 주식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우선주식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	197,454,800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 제3항
9. 납입일		2019년 11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직전 영업연도 말
11.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9년 11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이사회결의일 (결정일)		주주총회 결의일: 2019년 11월 6일
- 사외이사 참석 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 (감사위원)참석여부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15. 제출을 면제 받은 경우 그 사유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 정관 제9조 제3항에 따라 본건 신주발행을 승인한 2019년 11월 6일자 주주총회 개최 일을 의미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9조 제3항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임원에게 신주를 발행함.

<p>제(2)항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3.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그 고객, 외국인투자자 또는 국내에 소재한 그 자회사, 국내 기관투자자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개월이 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주)	비고
신 민 기	공동대표이사	임원	없음	1 주	